경업금지가처분

[대구지법 2012. 4. 30. 2012카합103]



【판시사항】

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,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,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, 丁 회사가 乙,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,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,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,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, 丁 회사가 乙,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,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,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,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,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,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,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,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민법 제103조

【전문】

【신 청 인】

【피신청인】

【주문】

1

- 1.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

【신청취지】피신청인 1은 [별지]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에서 ○○○ 어학원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피신청인 1은 제3자에게 위 ○○○ 어학원의 영업권을 임대·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경영하는 위 ○○○ 어학원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.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.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[이유]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[이유]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[이유]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】1. 기초 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.

- 가. 신청외 1은 '△△영어학원'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 266-2 세광빌딩에 △△SM영어학원(본원), 2008년경 같은 구 범어1동 792-2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, 같은 구 범어2동 171-4 세기빌딩 4층에 위 학원의 범어1관, 2010년경 위 세기빌딩 3층에 범어2관, 2009년경 같은 구 범어2동 221-5 조앤킴빌딩 5층에 위 학원의 텝스·토플관을 각 개설하였다.
- 나. 피신청인 1은 2008. 2.경부터 2008. 10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, 2008. 11.경부터 2009. 12.경까지는 △△영어학원 범어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, 피신청인 2는 2008. 2.경부터 2010. 12.경까지 △△영어학원 본원의 고등부 교무주임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다.

신청외 1은 2009. 9. 17. 피신청인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각 업무위임계약(이하 '이 사건각 업무위임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피신청인 1(소갑 1호증의 1)피신청인 2(소갑 1호증의 3)제4조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